

대 만	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(수시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(2014년 7월 3일) / 홍콩aT센터

구분(택1)	핵심 내용
(*통관) (*검역) ✓(*라벨링) (*기타)	☐ 「시판 과채즙의 포장음료 표기 규정」 수정안 발표

주요 내용 및 시사점 / 대처 방향
☐ 주요 내용 ○ 「시판 과채즙의 포장음료 표기 규정」 수정안 발표 - 2013년 10월 2일 신규 제정되었고 2014년 3월 3일 수정안 발표 - 시행일 변경 : 2015년 7월 1일 => 2014년 7월 1일(제조일 기준)부터 시행 - 외포장 표기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함 ○ 공고 사항 1. 과채즙 총 함량 10% 이상인 것 : 원액 함유율 표기 의무화, 과채즙명을 품명으로 하고, 종합 과채즙 일 경우 품명 또는 포장 정면에 본 상품이 “종합” 과채 음료임을 표기 2. 과채즙 총 함량이 10% 이하인 것 : 외포장 정면에 “과채즙 함량 10% 미달” 표기 또는 원액함유량을 직접 기입 3. 과채즙 미함유 인 것 : 상품 외포장 정면에 “과채즙 무함유” 표기 의무화, 품명 내 과채즙 명칭을 포함 할 경우 ~맛 ~향 등으로 표기 ○ 위반 시 제재조치 -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 47조에 의거하여 제 22조 규정 위반 시 NT\$3~300만불(한화 약 1~100백만원) 의 벌금 구형 가능 - 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동법 제 47조에 의거 NT\$400만불 이하 (한화 약 140백만원) 구형 가능 - 동법 제 52조 규정에 의거 회수 수정조치, 수정 전 시판 금지, 폐기 등의 조치 가능
☐ 시사점 / 대처 방향 ○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 규정이 보다 더 강화됨에 따라 한국 농식품의 對 대만 수출 시 성분 및 표기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,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대비가 필요함 ○ 관련 웹사이트 https://consumer.fda.gov.tw/Law/Detail.aspx?nodeID=518&lawid=302 (번역본 : 붙임 1 참고)
☐ 발표 일자/ 출처 : 2014년 3월 3일 대만 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(FDA) 공고

<붙임 1> 「시판과채즙포장음료표기규정」 번역본(파란색 : 수정된 내용)

규정	품명 표시 규정										
시판 과채즙 포장음료 표기규정 (「宣稱含果蔬汁之市售 包裝飲料標示規定」) (2014년 3월 3일)정정 署授食字第1031300643호	1. 본 규정은 식품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함 2. 본 규정은 상품 외관 포장 상 "과채" 라는 명칭(품명 포함) 또는 과채류 도안이 표시된 직접 음용하는 포장 음료에 해당됨 3. 과채즙 함량 10% 이상 첨가된 음료는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함 (1) 상품 외관 정면에 명확한 원액 함량을 표기해야함 (2) 2종 이상 과채즙을 혼합한 음료는 품명이 사용된 과채즙이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 함 ㉠ 품명 상 과채 명칭 전체를 기입하고 그 명칭은 함량의 고저 순서대로 표기함 ㉡ 품명 상 과채명칭 전체를 기입하지 않는다면 품명 또는 외포장 정면에 "종합과채즙", "혼합과채즙"으로 표기해야 함 4. 과채즙 함량 10%에 미달한 음료는 내용물 명칭 외에도 과채즙 등의 동일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서는 안 되며, 상품 외관 정면에 "원액 함량 10% 미달"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하며, 실 원액 함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함 5. 과채즙이 미첨가된 것은 아래 규정에 부합해야함 (1) 상품 외관 정면에 "과채즙 무함유"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해야 함 (2) "과채" 라는 명칭을 사용한 상품은 품명 상 "맛", "향" 또는 동일 의미의 글자를 표기함 6. 외포장 정면에 원액 함유율을 표기해야 하며, "종합과채즙음료", "혼합과채즙음료", "과채즙 총 함량 10% 미달", "과채즙 무함유" 또는 동일 의미 글자인 경우 그 글자체 및 색깔은 포장 바탕색과 확연히 달라야 하며 글자크기는 아래 규정을 따라야 함 <table><tr><th>상품 체적(ml)</th><th>글자 크기(cm)</th></tr><tr><td>150이하</td><td>각 0.3 이상</td></tr><tr><td>151~300</td><td>각 0.5 이상</td></tr><tr><td>301~600</td><td>각 0.8 이상</td></tr><tr><td>601 이상</td><td>각 1.2 이상</td></tr></table> 7. 시행 일자 : 2014년 7월 1일 시행	상품 체적(ml)	글자 크기(cm)	150이하	각 0.3 이상	151~300	각 0.5 이상	301~600	각 0.8 이상	601 이상	각 1.2 이상
상품 체적(ml)	글자 크기(cm)										
150이하	각 0.3 이상										
151~300	각 0.5 이상										
301~600	각 0.8 이상										
601 이상	각 1.2 이상										